

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34호의9서식] <신설 2025. 8. 14.>

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제작자등의 명칭	제작자등록번호	
	대표자명	전화번호	
	주소		
자동차	차명	형식	
	차종	원동기형식	
	제원관리번호	소프트웨어명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1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성능시험대행자 귀하

첨부서류	1.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항목 전·후 비교표 2.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정보의 전송 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3.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4. 그 밖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목적·기술적 특징 등에 대한 설명자료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요청하는 자료	수수료
		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

처리절차

